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41
----------	------

2025년 9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11일, 이종환 의원 외 25명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4일
다. 상정일자: 제33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9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종환 의원)

- 가. 제안이유
- 최근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수상스키, 카약, 서핑 등 다양한 수상레저활동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한강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상 세부 입법 규정은 불비(不備)한 상태임.
 - 안전협의회 설치 취지는 수상레저활동 안전 업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통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것임.

- 또한, 서울시가 1,000만 한강 수상 이용 시대를 열겠다는 “2030 리버시티, 서울” 계획에 따라 한강에서의 수상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의 활동성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한강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 안전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 안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 관계 전문가에 대한 의견 청취 등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 요청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6조는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 제35조¹⁾에 따라 시장이 관계 행정 기관과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안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세부 협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수상스키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 또한 커지고 있는바, 안전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 중 안전협의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안전협의 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1) 제35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회(이하 “안전협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시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현행 제9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안전협회의 구성 등) ① 안전협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수상레저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및 민간단체 전문가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안전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안전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 ③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안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⑤ 안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안전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6조(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회의)</u>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u><신 설></u>	<u>제6조(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회의 설치)</u>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시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제7조(안전협의회의 구성 등)</u> ① 안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현행	개정안
<신 설>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수상레저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및 민간단체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안전협회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안전협회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안전협회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현행	개정안
	③ <u>안전협의회</u>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u>안전협의회</u>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상레저 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가 된다. ⑤ <u>안전협의회</u>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u>안전협의회</u>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안전협의회</u>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u><신 설></u>	제9조(의견청취 등) <u>안전협의회</u> 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생략)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제11조(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현행	개정안
및 운영) ① (생략) ② (생략) <u>제9조</u>(운영 시 의무 등) ① <u>제8조</u>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대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u>제10조</u> (생략) <u>제11조</u> (생략)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2조</u>(운영 시 의무 등) ① <u>제11조</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3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 <u>제14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